한-인도 CEPA 서비스무역



#서비스무역

*서비스무역 개요

@서비스무역의 개념

“서비스무역”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조).

-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체약상대국의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국경 간 공급
-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그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한 체약상대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해외소비)
-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에 의한 체약상대국의 영역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상업적 주재)
-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에 의한 체약상대국 영역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자연인의 주재)

@서비스무역의 적용범위

서비스무역은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함)상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2조제3항).

- 정부조달
- 정부지원 융자・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의 수령
-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가 국내의 서비스(소비자 및 공급자 포함)에 배타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러한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부가되는 모든 조건
- 정부권한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 다만, 그러한 서비스는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

지 않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공급자와의 경쟁 하에 공급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정기적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서비스를 포함하는 운송 및 비운송 항공서비스 및 항공서비스를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항공기 수리 및 정비서비스
・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 컴퓨터 예약제도 서비스

@서비스무역의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의 부여
- 자국의 구체적인 약속에 관해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각 당사국은 체약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게 같은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5조제1항).

※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지역 또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같은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동종의 서비스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5조제3항).

※ 서비스무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양허표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가(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서비스무역에 대한 인도의 양허표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나(인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내국민대우의 충족
- 당사국은 자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나 형식적으로 다른 대우를 체약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내국민대우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5조제4항).

불리한 대우의 간주
- 형식적으로 같거나 다른 대우가 체약상대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공급자와 비교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5조제5항).

시장접근
- 서비스무역의 공급을 통한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체약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자국의 양허표상에 합의되고 명시된 조건·제한 및 요건에 따라 규정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4조제1항).
- 시장접근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자국의 양허표에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는 당사국이 자국의 일부지역이나 전 영역에 걸쳐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4조제2항).

· 수량쿼터·독점·배타적 서비스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서비스 공급을 위해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포함되지 않음)
·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는,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에 대한 제한

· 서비스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인 특정 형태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 외국인 지분소유의 최대 비율한도 또는 개인별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합계의 총액 한도에 의한 외국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점진적 자유화
양 당사국은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무역에 관하여 양 당사국간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모든 차별의 폐지를 촉진하기 위해 최소한 매 3년마다 또는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신속히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를 검토하도록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반적 및 개별적 분야에서 국가정책 목적 및 당사국의 발전 수준에 관하여 적절히 존중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9조).

*서비스무역의 내용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양허표의 내용
- 각 당사국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국이 행한 구체적 약속을 양허표에 규정합니다. 그러한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해 각 양허표에는 다음을 명시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7조제1항).

· 시장접근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추가적 약속과 관련한 조치
· 약속의 이행을 위한 시간계획
· 약속의 발효일

※ 서비스무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양허표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가(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서비스무역에 대한 인도의 양허표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나(인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추가적 약속

- 양 당사국은 자격·표준 또는 면허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양허의 대상은 아니지만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하여 약속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은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6조).

양허표의 수정

- 양 당사국은 약속이 발효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양허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는 당사국은 그 수정이나 철회를 이행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전에 그 체약상대국에게 약속의 수정 또는 철회의 의사를 통보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8조제1항).
- 체약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하는 당사국은 모든 필요한 보상적 조정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협상을 개시하며, 이 경우 협상 전의 양허표에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일반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8조제2항).
- 양 당사국은 협상에 실패했을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8조제2항).

@국내규제

조치의 합리적 시행 보장

- 구체적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7조제1항).
- 각 당사국은 영향을 받은 체약상대국 서비스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그 행정결정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중재 또는 행정 재판 또는 절차를 유지하거나 실행 가능한 한 그러한 절

차를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가 관련 행정결정을 위임받은 기관과 독립되지 않은 경우 당사국은 그 절차에서 실제로 객관적이고 공평한 검토가 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7조제2항).

절차의 통보 및 정보의 제공

- 구체적 약속이 행해진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법과 규정에 따라 완전하다고 간주되는 신청서의 제출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자에게 그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합니다.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부당한 지연 없이 신청의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7조제4항).

조치를 위한 규율의 검토

- 자격요건 및 절차·기술표준 및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국내규제가 서비스무역의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할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이들 조치에 관한 규율 협상의 결과를 공동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7조제5항).

- 서비스를 공급할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것
- 면허절차의 경우 그 자체가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제한이 되지 않을 것

@자격의 인정

자격의 인정

- 당사국은 서비스공급자의 승인·면허 또는 증명(이하 ‘자격’이라 함)에 관한 표준 또는 기준을 충족할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8조제1항).

자격의 인정을 위한 협상의 장려

-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규제되는 서비스 분야에서 체약상대국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그 서비스 분야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해 각 당사국의 전문가 단체가 그 서비스 분야에서 조기의 성과를 성취할 목적으로 협상하고 타결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8조제2항).

비당사국에서 취득한 자격의 인정

- 당사국이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이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자격을 인정할 때,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체약상대국에게 그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협상하거나 그와 상응하는 것을 협상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8조제3항).

@독점적 서비스공급자

독점적 서비스공급자의 개념

- “독점적 서비스공급자”란 당사국 영역 내의 관련 시장에서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그 당사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승인을 받거나 설립된 모든 공인(公人) 또는 사인(私人)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조).

양허표에 따른 행동의 보장

-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독점적 서비스공급자가 관련 시장에서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불합치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9조제1항).
- 당사국의 독점적 서비스공급자가 자신의 독점권 범위 밖에 있고,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또는 제휴기업을 통하여 경쟁하는 경우 당사국은 공급자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약속과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자국 영역 내에서 행동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9조제2항).

독점행위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체약상대국의 독점적 서비스공급자가 독점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공급자를 설립·유지 또는 승인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에게 자국 영역 내에서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9조제3항).

@영업관행

영업관행에 따른 서비스 제한

- 양 당사국은 독점적 서비스공급자의 영업관행을 제외한 서비스공급자의 특정 영업관행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0조제1항).

영업관행 폐지의 협의

-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체약상대국의 요청이 있으면 영업관행 폐지를 목표로 협의를 개시합니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해 충분히 호의적으로 고려하며, 관련 정보(비밀정보 제외)를 제공하도록 협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0조제2항).

@서비스와 투자의 연계

연계 대상 투자조항

-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장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들은 오직 투자와 관련된 범위에서 체약상대국의 영역 내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해 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23조제1항가목).

- 대우의 최소기준(「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4조)
- 송금(「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0조)
- 수용 및 보상(「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2조)

· 손실 및 보상(「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3조)
· 대위변제(「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4조)
·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5조)
· 사법 및 행정절차에 대한 접근(「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9조)
·당사국과 체약상대국 투자자간의 분쟁해결(「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21조)
· 발효·기간 및 종료(「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22조)

※ "상업적 주재"란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모든 유형의 사업적 또는 전문적 설립체를 말하며 여기에는 다음의 내용도 포함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조).

· 법인의 설립·인수 또는 유지
·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개설 또는 유지

적용되는 조치
-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2조의 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항들은 투자와 관련된 범위에서 체약상대국의 영역 내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한 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가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23조 제1항나목).

· 수용 및 보상(「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2조)
· 당사국이 수용 및 보상(「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2조)을 위반했다는 청구에 대해서만 당사국과 체약상대국 투자자간의 분쟁해결(「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21조)의 적용

*금융서비스

@개념

금융서비스

- “금융서비스”란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금융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8호].

1.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 직접보험(공동보험 포함)

✓ 생명보험

✓ 비생명보험

· 재보험 및 재재보험

·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 상담·계리·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서비스

2.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 대중으로부터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 소비자 신용대출·담보대출·팩토링 및 상업거래 금융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 “팩토링(factoring)”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얻은 채권을 변제기 전에 양도하여 초기에 채권추심(債權推尋)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매매 형식의 계약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용어 검색).

· 금융리스

· 신용카드·선불카드·직불카드·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서비스

· 보증 및 약정

·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자기계

정 또는 고객계정으로 거래하는 것

✓ 화폐시장 상품(수표・어음 및 예금증서를 포함)
✓ 외환
✓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파생상품
✓ 스왑・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 양도성 증권
✓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양도가 가능한 증서 및 금융자산

・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매출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 자금중개업
・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 모든 유형의 집합투자 관리, 연금기금 관리・보관・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관리
・ 증권・파생상품 및 그 밖의 양도 가능한 증서를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서비스
・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활동에 대한 자문・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자율규제기구
- “자율규제기구”란 유가증권 또는 선물 거래소나 그 시장, 결제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협회를 포함하여 중앙・지역 또는 지방정부나 당국의 법령 또는 위임에 의해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나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8호].

@금융서비스의 적용범위

서비스무역의 일반원칙 적용

- 금융서비스는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함)에 따른 서비스 부분의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등 일반원칙이 공통으로 적용됩니다(한·인도 CEPA 주요내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1호나목].

· 통화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할 때 중앙은행, 통화당국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

· 법정사회보장제도 또는 공적퇴직연금제도를 구성하는 활동

· 정부의 계정으로 보증 또는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의한 활동

@국내규제

건전성을 위한 조치 채택

- 양 당사국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자의 보호 또는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및 안전성 보장 등을 위한 건전성 사유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2호가목].

- 건전성 사유로 채택한 조치가 협정의 내용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이는 당사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2호가목].

거래정보 등의 공개요구 금지

- 양 당사국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고객의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나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2호나목].

@건전성 조치의 인정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국제규범 제정기구 또는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정은 조화나 다른 수단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관련 국제규범 제정기구나 비당사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3호].

@투명성

투명성의 중요성 인정

-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정과 정책이 외국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영업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4호가목].

일반적 적용 규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보장

-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구체적 약속이 수행되는 분야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4호나목].

-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사전에 공표하고 그 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과 체약상대국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4호다목].

자율규제기구의 규칙 공표

- 각 당사국은 자국의 자율규제기구가 채택하거나 유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4호바목].

금융서비스 관련 조치에 대한 질의·응답

-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유지하거나 설치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4호사목].

- 각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이해관계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4호아목].

-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그 신청의 처리상황을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당국이 신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국은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4호자목].

- 적용 가능한 법 또는 규정에 행정적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신청자의 완료된 신청에 대해 120일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합니다. 신청은 모든 관련 심리가 개최되고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되기 전에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20일 이내 또는 적용 가능한 법 또는 규정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4호차목].

-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으면 신청을 거부한 규제당국은 신청거부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4호카목].

@정보의 취급

양 당사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

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5호].

-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개인 고객의 금융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 공개될 경우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비밀정보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

@신금융서비스의 공급

신금융서비스의 개념

- “신금융서비스”란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서가 아닌 체약상대국 영역 내에서 공급되는 금융서비스를 말하며,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법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6호가목].

신금융서비스의 공급

-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같은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을 허용하는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체약상대국의 금융기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6호나목].
- 당사국은 신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의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인가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6호나목].

*서비스무역의 제한

@국제수지보호를 위한 서비스무역의 제한

제한의 인정

- 각 당사국은 국제수지 및 대외금융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

는 경우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그러한 의무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지불 또는 송금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약속이 행해진 서비스무역에 대해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3조제1항).
- 경제개발 과정에 있는 당사국의 경우 국제수지에 대한 특별한 압력으로 인해 특히 경제개발계획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외환보유고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제한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3조제1항).

제한의 한계
- 국제수지 및 대외금융상의 문제로 서비스무역을 제한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지켜져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3조제2항).

· 「국제통화기금협정」과 합치할 것
· 체약상대국의 상업·경제 및 금융상 이익에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
· 필요 이상의 제한을 하지 않을 것
· 제한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될 것
· 내국민대우에 기초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비당사국보다 체약상대국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을 것

@서비스무역의 제한금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금지
- 각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함)의 발효일부터 체약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금지되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거나 지속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1조제1항).

지불 및 송금 제한 금지
- 국제수지 및 대외금융상의 문제로 서비스무역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

은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관련한 경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송금 및 지불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2조제1항).
- 양 당사국은 외환조치 등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협정」을 따르며, 국제수지 및 대외금융상의 문제로 서비스무역을 제한하는 경우나 국제통화기금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합치하지 않는 자본거래에 관한 제한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2조제2항).

@서비스무역의 예외
일반적 예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는 체약상대국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서비스무역에 대해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4조제1항).

·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다음 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기만행위 및 사기행위의 방지 또는 서비스계약의 불이행의 효과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
✓ 사적인 자료의 처리 및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기록 및 계정의 비밀보호 조치
✓ 안전조치

· 상이한 대우가 체약상대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직접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경우 내국민대우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

- 각 당사국은 당사국과 비당사국간의 양자간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따라 비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내국민대우 이상의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

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4조제2항).

안보에 따른 예외
- 양 당사국은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안보에 따른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행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5조제1항).

· 공개할 경우 당사국이 자국의 중대한 안보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정보의 비공개
· 군사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해지는 서비스공급과 관련된 조치
· 핵분열 및 핵융합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 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관계상 긴급상황에서 취해지는 조치
· 통신·전력·수도공급을 위한 주요 공공기반시설을 무력화하거나 그 기능을 저하시키려는 고의적인 시도로부터 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UN헌장의 의무에 따라 행하는 당사국의 조치

#통신무역

*통신무역 개요
@개념
상호접속
- "상호접속"이란 하나의 서비스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조).

지배적 사업자
-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로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가격 및 공급에 관한 참가요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조).

- 필수설비에 대한 지배
- 시장에서 자신의 지위 이용

공중통신전송서비스

- "공중통신전송서비스"란 당사국이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명시적 또는 사실상 요구하는 모든 통신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면에서 종단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지점 사이에 고객정보의 실시간 전송을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전보·전화·텔렉스 및 데이터 전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조).

@독립적인 규제기관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보장

-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 또는 분쟁해결기관이 모든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8조제1항).

절차의 평등 보장

-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 또는 분쟁해결기관의 결정 및 이용절차가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평등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8조제2항).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자국이 정의한 보편적 서비스의 종류에서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9조).

@투명성
각 당사국은 통신무역 분야에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3조).
- 자국 통신규제기관의 결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공표되거나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공개되도록 할 것
- 자국 통신규제기관이 제안하는 규범제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사전공고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
-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에 관한 자국의 조치가 공개될 것
· 서비스의 요율 및 그 밖의 조건
·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에 부착하기 위해 적용되는 조건
· 통보·허가·등록 또는 면허의 요건
· 표준관련 조치의 준비·수정 및 채택을 담당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

*공중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접근 및 이용보장
각 당사국은 체약상대국의 서비스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전송망과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3조제1항).

@서비스보장내용
허용되는 서비스
- 각 당사국은 체약상대국의 서비스공급자가 개인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통과하여 제공되는 모든 공중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체약상대국 서비스공급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

정」 제7.3조제2항).

· 서비스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공중통신전송망에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 또는 임대하고 부착하는 것
· 개인전용 또는 소유회선을 공중통신전송망 및 서비스나 다른 서비스공급자의 전용 또는 소유 회선과 접속하는 것(다만, 인도의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사설망과 공중통신망과의 상호접속이 허용되지 않지만 관련 법률의 개정 시 상호접속을 허용함)
· 교환·신호 및 처리기능을 수행하는 것
· 공중에 일반적으로 통신전송망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 모든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체약상대국의 서비스공급자가 선택한 운용규약을 사용하는 것
· 서비스의 범위 및 형태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부합되는 한도에서 모든 전용 또는 소유회선을 통해 개별 또는 복수의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서비스 사용의 보장
- 각 당사국은 체약상대국의 서비스공급자가 사내통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통과하여 정보를 이동시키거나, 당사국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거나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해 공중통신전송망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3조제3항).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조치
- 각 당사국은 메시지의 보안 및 비밀성을 보장하거나 최종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무역에 대해 위장된 제한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3조제4항).

@서비스에 대한 조건부과의 원칙적 금지
각 당사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중통신전

송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부과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3조제5항).

- 공중통신전송망 서비스공급자의 공공서비스 책임, 특히 그 통신망 또는 서비스를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 공중통신전송망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에는 체약상대국의 서비스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 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이 안보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이 되지 않게 하고, 유사한 유형의 서비스공급자 및 이용자에게 공개 가능하고 차별없이 적용되는 당사국의 법령·규칙 또는 법규 및 공공정책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것

서비스 이용 조건에 포함되는 사항
- 양 당사국이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중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3조제6항).

· 서비스의 재판매 또는 공동사용에 대한 제한
· 인터페이스규약을 포함하여 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해 특정한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 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 장비를 그러한 망에 부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
· 전용 또는 소유회선과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 또는 다른 서비스공급자의 전용 또는 소유회선의 상호접속에 대한 제한
· 통보·등록 및 면허

*지배적 사업자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
합리적인 대우의 보장

- 각 당사국은 자국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체약상대국의 공중통신서비스의 공급자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자회사·계열회사 또는 비계열서비스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4조제1항).

· 동종의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이용가능성·공급·요율 또는 품질
· 상호접속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이용가능성

대우의 평가
- 당사국은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자회사·계열사 및 비계열 서비스공급자가 동일한 상황에 있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대우를 평가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4조제2항).

차별 또는 제한의 금지
-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망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무역에 대해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4조제3항).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기반에 대한 접근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접근의 제공
- 각 당사국은 자국 내의 지배적 사업자가 체약상대국의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전반적인 정책 테두리 안에서 상호합의한 조건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조건 및 요율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5조제1항).

· 상호접속,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지배적 사업자의 망세분화 요소에 대한 접근
· 지배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상호접속 또는 망세분화

요소에 대한 접근을 위해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병설
· 지배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전주, 관로, 도관, 그 밖에 그 당사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물에 대한 접근

- 서비스 접근의 이행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5조제2항).

차별 또는 제한의 금지
-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망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무역에 대해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5조제3항).

@경쟁보장장치
통신에서 반경쟁적 관행의 방지
- 각 당사국은 관련 당국을 통해 자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통신서비스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6조제1항).

경쟁보장장치
- 반경쟁적 관행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6조제2항).

· 반경쟁적 결과를 위해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 공중통신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그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상호접속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배적 사업자의 망 내의 기술적으로 실행가능한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도 규제기관의 규정에 의한 상호약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7조제1항).

· (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 비차별적인 조건 및 요율에 따라 자신·비계열사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해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품질로 제공

·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 요구되지 않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 공급자가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하는 기간·기술표준·규격을 포함한 조건 및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시의적절하게 제공

·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비용을 반영하는 요율,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라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공급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제공

상호접속의 공개

-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배적 사업자의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 상호접속제안 중 하나를 공개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7조제2항).

-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지배적 사업자와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가능한 절차를 공개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7조제3항).

- 각 당사국은 자국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당사자인 모든 상호접속협정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7조제4항가목).

- 각 당사국은 자국의 지배적 사업자와 그 밖의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공급자 간에 유효한 상호접속협정에 포함된 상업적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규제기관이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의 적용을 받는 조건으로 상호접속을 하려는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공급자에게 이러한 상호접속협정을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

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7조제4항나목).

상호접속 분쟁의 해결
-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하는 체약상대국의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공급자가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지정된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 상호접속에 대한 적절한 조건 및 요율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에 관한 분쟁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국내기관에 이의신청하는 것을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7조제5항).

#인력이동

@개념
입국비자
- “입국비자”란 체약상대국의 자연인이 영주할 의사 없이 주재국 영역에 거주·취업 또는 체류할 권리를 보장하는 취업비자 또는 상용비자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2조제2항나목).

일시입국
- “일시입국”이란 상용방문자·기업 내 전근자 또는 전문가가 영주할 의사 없이 명백하게 상용목적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당사국에 입국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2조제2항다목).

서비스판매자
- “서비스판매자”란 일반 공중에 대해 직접 판매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종사하지 않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의 대리인으로서 서비스공급자를 위해 서비스 판매를 교섭할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에 일시입국하고자 하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자연인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2조제2항라목).

상품판매자

- “상품판매자”란 체약상대국의 일반 공중을 상대로 직접적인 판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산업 또는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체약상대국의 자연인으로서, 또는 기업에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통 또는 소매판매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체약상대국에 일시입국하고자 하는 자로서 공산품 또는 농산품의 제조·생산·공급 또는 유통에 종사하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자연인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2조제2항마목).

전문가

- “전문가”란 전문지식을 이론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자연인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2조제2항바목).

· 취업을 위해 최소 3년 또는 그 이상의 학업을 요구하는 전문분야에서의 중등과정 이후의 학위(또는 그러한 학위에 상응하는 것)취득. 학위는 대한민국 또는 인도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수여된 학사·석사 및 박사를 포함합니다.

· 규제가 적용되는 전문직에 대해서는 상용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당사국의 관련 당국에 의해 구체적으로 특정화된 등록·허가 또는 자격

상용방문자

- “상용방문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국의 자연인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2조제2항사목).

· 서비스판매를 위해 또는 서비스공급자와 서비스판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체약상대국에 입국하는 서비스판매자

· 상품판매에 관한 협상이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적인 판매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협상을 목적으로 일시입국하고자 하는 자

· 아래에 정의된 관리자·임원 또는 전문가로서 투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

기업 내 전근자

- “기업 내 전근자”란 아래에서 ‘조직’으로 언급된 서비스 공급자, 법인, 투자자 또는 체약상대국 영역에 지점·자회사·제휴회사 형태로 설립된 회사의 피고용인을

말하며, 일시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 고용된 자로서 아래와 같이 정의된 관리자・임원 또는 전문가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2조제2항아목).

・ “관리자”란 주로 조직 또는 그 조직의 부서나 과를 지휘하고 그 밖의 감독관・전문가 또는 관리자급 피고용인의 업무감독・통제, 고용・해고, 승진 또는 휴가의 허가와 같은 그 밖의 인사 조치를 취할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인 업무수행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2조제2항아목1)].그러나, 감독받는 피고용인이 전문가가 아닐 경우, 제일선의 감독관은 관리자에 포함되지 않고, 서비스의 공급 또는 투자 운영에 필요한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직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언급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리자가 서비스의 공급 또는 투자 운영에 필요한 직무를 부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2조제2항아목1)].

・ “임원”이란 주로 조직의 관리를 지휘하고 의사결정 시 폭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상위급 임원・이사회 또는 회사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시만을 받는 자연인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2조제2항아목2)].임원은 실제적 서비스공급 또는 투자운영에 관련된 직무를 주로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언급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임원이 서비스의 공급 또는 투자 운영에 필요한 직무를 부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2조제2항아목2)].

・ “전문가”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조직의 서비스・연구・장비・기술 또는 관리에 대한 관련 지식을 보유한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합니다. 전문가는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2조제2항아목3)].

※ “법인”이란 회사, 신탁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1인기업, 조합, 협동조합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영리 또는 비영리 및 사유(私有) 또는 정부소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정당하게 설립되거나 다르게 조직된 법적 실체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조).

계약서비스 공급자

- “계약서비스 공급자”란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적합한 교육 및 그 밖의 자격을 갖추고 체약상대국에 상업적으로 주재하지 않으며 체약상대국 법인과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어느 한 쪽 당사국 법인의 피고용자로서 계약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계약서비스 공급자는 입국허가 신청일 직전 1년 이상 그 법인의 피고용자여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2조제2항자목).

독립전문가

- “독립전문가”란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적합한 교육 및 그 밖의 자격을 갖추고 체약상대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과 서비스 공급계약 하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영업자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2조제2항차목).

@인력이동의 적용범위

인력이동은 체약상대국의 영토에 입국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국의 자연인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2조제1항).

- 당사국의 서비스판매자
- 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
- 당사국의 상품판매자
- 체약상대국 영역 내에 투자한 당사국의 투자자
- 체약상대국의 영역 내에 투자한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해 고용된 자

인력이동의 적용 제외

- 인력이동은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나 국적·영주 또는 영구적인 고용에 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1조제2항).

@일시입국의 허용

일시입국의 신청 및 처리

- 각 당사국은 공중보건·안전 및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적용가능한 조치에 따라 달리 입국자격을 갖춘 체약상대국의 자연인에 대해 일시입국을 허용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3조제1항).
- 각 당사국은 체약상대국의 자연인, 특히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자격의 인정에 따라 상호인정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전문직 종사자의 체류연장 요청을 포함한 일시입국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체류기간 및 그 밖의 조건을 포함한 최종결정 결과를 일시입국 신청자에게 직접 또는 그의 장래 고용인에게 통지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3조제2항).

사보장기금 납부요구 금지

- 체약상대국의 영역에 일시입국이 허용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주재국은 사회보장기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주재국에서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3조제3항).

분쟁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용목적 방문자의 입국거부

- 당사국은 일시입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상용목적 방문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입국비자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3조제4항).

· 고용장소 또는 고용하려는 장소에서 진행 중인 노동분쟁 해결
· 그러한 노동분쟁에 관련된 자연인 또는 법인의 고용

방문자별 일시입국 허용

- 상용방문자

· 대한민국은 상용방문자에게 최대 90일까지 일시입국을 허용하며, 인도는 상용방문자에게 최대 180일까지 또는 1회 방문 시 180일 체류요건으로 180일을 초과하는 최

대 5년의 기간 동안 일시입국을 허용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3조제5항).

· 상용방문자에게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용비자가 발급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3조제5항).

✓ 일시입국에 적용되는 출입국 조치에 합치할 것
✓ 체약상대국의 국적증명을 제출할 것
✓ 주재국에서 상업적 주재를 하고 있지 않은 법인의 피고용인일 것
✓ 방문하는 당사국 내에 있는 재원(財源)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상용방문자일 것

· 어느 당사국도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노동시장 영향평가를 요구하거나 상용방문자의 일시입국과 관련한 수량제한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3조제5항).

- 기업 내 전근자

· 출입국 조치에 부합하는 체약상대국의 기업 내 전근자에게 대한민국은 초기기간 2년, 인도는 초기기간 1년 또는 계약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일시입국을 허용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3조제6항).

· 국가별로 다음 요건이 충족될 경우 기업 내 전근자의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3조제6항).

✓ 대한민국의 경우 이에 기초하고 있는 요건들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경우
✓ 인도의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위의 조건이 신청자에 의해 여전히 충족될 경우

· 어느 당사국도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노동시장 영향평가를 요구하거나 기업 내 전근자의 일시입국과 관련한 수량제한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3조제6항).

- 전문가

· 각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함) 부속서 8-가의 전문가목록에 기재된 전문직종에서 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독립전문가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체약상대국 전문가가 달리 일시입국에 적용되는 출입국 조치에 따르고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초기기간 1년 또는 계약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그 전문가에게 일시입국을 허용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3조제7항).

✓ 체약상대국의 국적 증명

✓ 주재국의 법적 실체가 전문가의 서비스를 사용하겠다는 계약서를 포함하여 전문가가 고용되는 것을 증명하고 입국목적을 명시한 서류

✓ 관련된 최소한의 교육요건 또는 대체자격의 취득을 입증하는 서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일시입국, 취업의 허용

- 각 당사국은 기업 내 전근자·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독립전문가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일시입국에 적용되는 출입국 조치에 따르고, 관련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게 일시입국 및 취업을 허용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4조).